

‘도서관법’ 얼마나 실효 거뒀나

발효 1년에 가시적 성과 없어… 업계간 긴밀한 협조 이뤄야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오랜 논란과 공방끝에 제정, 지난 94년 7월 25일 발효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시행 1년을 훌씬 넘어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과 관련한 공방은 『출판저널』 134호 참조).

도서관 현장과 학계 쪽에서 주로 터져나오고 있는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 법의 주요사항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마련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운영 ▲문고의 설립과 지원 등 몇가지 항목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지원이 법 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는 지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 실현 의지 약화된 것 아니냐”

연세대 문헌정보학과의 한상완 교수는 “법 제정 당시 도서관진흥법과 독서진흥법을 따로 마련하는 움직임에 반대했고, 이 두 법이 보완 결충되어 현재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정부에서는 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도서관계와 출판계도 서로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서였던 도서관 정책과가 94년 ‘도서관박물관과’로 통합된 것은 정부의 도서관 육성의지를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도서관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해놓고 도서관 업무를 박물관과 통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정부 출연금이 아직 한푼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출연금이 나오지 않으니 민간이나 기타 단체의 기부금이나 다른 형태의 기금마련은 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교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법이 제정되고 책의 해가 끝나자 마치 손을 뗀 듯한 인상을 준다”고 말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출판협회 쪽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

지난해 7월 발효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시행 1년을 훌씬 넘어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금마련을 위한 출연금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법실행의 담당부서가 없으며,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긴밀한

협조가 없다는 지적이다.

도서관협회의 한 관계자도 “낙후한 우리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인데 이 법을 제정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지난 9월 29일 도서관협회 주최로 열렸던 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관계자 및 교수,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금모금활동을 벌인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의 발로에서 였다.

이밖에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대표기구로 조직하게 돼 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94년 10월 구성, 12월 단 한차례의 회의를 가졌을 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지방 위원회는 아직 한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는 사정도 법의 시행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가시적 성과 기대하기는 일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성과를 둘러싼 비판에 대한 반박도 적지 않다.

책의 해 조직위원회 홍보간사를 맡았던 윤청광(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씨는 “이러한 평가들은 속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법 제정 이후 각 기업체나 마을 단위의 문고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94년을 원년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원식, 집행위원장 김낙준) 등을 중심으로 한 독서진흥운동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다고 밝힌다. 아울러 올해로 두



지난해부터 발효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성과를 둘러싸고 비판의 소리가 높다. 사진은 93년 공청회 때 모습.

번째 맞는 9월 독서의 달 행사의 다채로움이나 독서문화상 시상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일로 꼽는다.

그는 “법 제정 당시 문고설치 등을 강제 조항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관련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권장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실제로 독서진흥운동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국민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고 이는 장기적인 운동이지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힌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실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우선 밝힌다. 그는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는 도서관 확충사업이나 문고 지원계획 등도 사실은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법제정 이후 문체부가 마치 아무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문체부가 벌이고 있는 도서관 육성과 독서진흥을 위한 노력들을 보면, 우선 현재 317개관에 이르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97년까지 430개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이미 90억원을 지원, 9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했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도서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도서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100개 정도의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농어촌 특별세 재원 84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한편, 이동도서관이나 작은 문고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여 94

년에는 이동도서관 8개소를 추가 운영했고 작은 도서관(문고) 100개소에 2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법 제 37조에 의거, 점자도서관 3개관도 설치한 상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성과를 둘러싼 이러한 엇갈린 평가들은 도서관의 질적 향상과 기능확대, 국민독서진흥사업이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결코 2순위의 정책으로 밀려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렵지 않게 한 목소리로 모아진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과 예산지원 등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성있는 노력들이 서둘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협력을 과제로 꼽는 이도 많다. 이들의 협력이야말로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독서문화운동을 펼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 박남정 기자